

다자녀가정 할인 제도성 특별약관(2306)

제 1 조 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

이 다자녀가정 특별할인 제도성 특별약관(2306)(이하 「특별약관」이라 합니다)의 적용대상은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상품에 한합니다.

제 2 조(보험료 할인 대상 및 보험료 할인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다자녀가정 할인에 관한 사항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의 「4.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」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.

제 3 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